

이중직 목회자 관련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요약

I. 배경 및 임무

이중직 목회자 문제에 대한 교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총회는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주었다: 1) 목회자 이중직의 정의를 세우고 2) 이중직의 성경적 지지를 명시하고 3) 교회, 노회, 목사 등과 관련한 재정적 적용과 책임을 언급하며 4) 노회의 감독, 문화적 차이, 교회 헌법의 적용을 고려한다.

II. 북미주 개혁교회의 사례

이중직 목회자 5인과 기타 비전통적 사역을 하는 목회자 6인의 스토리가 공유되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북미주개혁교회 내의 다양한 경험 중 일부를 보여준다.

III. 성경, 신학, 역사적 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일조를 통해 사역을 후원하는 것에 대한 요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축제적 기념, 제사장과 레위인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공급, 그리고 취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보조라는 세 가지 목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더불어 목회자들의 생계를 뒷받침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대함을 통해 계속해서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왔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재정적 필요를 채움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천막제조업자로서 때때로 이중직 사역을 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그가 세우는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선교적 기회를 수용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여행하면서 돈을 받고 가르치는 교사나 철학자들과 스스로를 구분하고 노동, 특히 육체 노동의 신성함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와 동일한 목적은 오늘날 이중직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교회 역사는 이러한 성경적 원칙들을 적용하는 가운데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북미주 개혁교회는 역사적으로 “일군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7; 마태복음 10:10 참조) 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십일조를 통해 목회자를 지원해 올 수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이런 가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목회적 환경에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중직을 수용한다.

IV. 정의

이중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몇차례의 부르심과 재정적 역동성, 책임의 역동성 및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시간 및 에너지 사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한다: “이중직 목회는 목회자가 급료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일하고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환경에 더하여 다른 직업에도 책임을 지고 종사한다.”

우리는 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비전통적 사역 방식을 알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비전통적 사역 방식의 다양한 유형을 개괄하고, 이를 보고서에서 때때로 언급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파트타임 목회자는 없으며 오로지 파트타임 방식만 있음을 명시한다. 모든 목회자는 소명 받은 공동체에서 완전한 그리고 항상 목사이다.

V. 문화적, 맥락적 고려사항: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며, 왜 중요한가?

비록 이중직 사역이 단일 인종 및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소수 민족 공동체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다르다. 지원하는 공동체가 직면한 교회의 구성 민족, 설립연수, 재정난의 정도는 오늘날 북미주 개혁신교회 내의 이중직 목회자의 증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북미주 개혁신교회 내 목회자들 중 이중직 목회자 비율은 앞으로 수 년 내에 다양한 이유로 급격히 증가할 확률이 크다.

이중직 사역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예측되는 증가는 재정적 지원, 삶의 질, 청빙 만족도 등 이중직 및 비전통적 사역 목회자들을 위한 적절한 돌봄에 있어 도전과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다.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목회자들이 이중직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분별하고, 이중직 사역의 균형을 잘 잡고, 탈진을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탈진에서 배움을 얻도록 목회자들을 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중직은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중직 목회자들은 몸소 경험한 증인으로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작고 재정이 부족한 교회가 비바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지날 때 “기독교의 강인함”을 보여줌으로써 도울 수 있으며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선교적 유연함을 제공할 수 있다.

VI. 카운실 및 노회의 감독

이 보고서는 카운실이 이중직 목회자 및 비전통적 형태 사역자 청빙과정 및 차후 연례 검토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감독하도록 격려하는 권고안들을

포함한다. 교회 방문자들은 이중직 및 기관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의 건강보험과 복지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VII. 재정적 고려 사항

청빙 교회와 노회는 모든 목회자가 지원 계획을 통한 “적절한 지원”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책임을 진다. 재정적인 고려사항에는 생활을 위한 사례비, 건강보험, 장애 보험, 연금 및 은퇴 대비책, 노회 학생 대출 펀드 및 기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VIII. 교회 헌법의 고려사항

교회 헌법은 이중직 목회자들과 기타 비전통적 형태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의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한다. 특별위원회는 교회 헌법의 여러 변화들이 비전통적 사역 계획을 지지하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교단 헌법 14-d 조와 15 조 및 보칙의 수정을 제안한다. 또한, 헌법 23-d 및 보칙 수정도 제안한다.

IX. 추가사항, 권고안 및 부록

이중직 혹은 기타 비전통적인 형태의 목회로 섬기고 계시는 목회자분들께 감사하며, 특별 위원회는 여러 가지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온라인 자료 목록 또한 포함되어 있다.